

“고객중심의 사고, 고도의 전문성, 신뢰받는 금융감독”



보도자료

2009. 9. 11.(금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		
책임자	채희성 팀장(3145-8230)	담당자	이상진 선임조사역(3145-8228)
배포일	2009. 9. 10.(목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8~92) 총 6매

제 목 :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

-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(제6회 경험생명표 포함)에 대해
-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모든 생보사에 통보('09.8.28)하였음

< 위험률의 종류 >

구 분	내 용
참조위험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의 통계를 이용 산출하여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로써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시(보험업법 §76④) *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시 자사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닐 경우 참조위험률을 (수정)사용 가능 (생보 : 매 3년마다 검증, 손보 : 매년검증)
표준위험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책임준비금 적립에 사용되는 위험률로 참조위험률 중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큰 위험률을 선별하여 금감원장이 지정(보험가격 자유화로 인한 요율 덤핑시 재무악화 방지 목적 : 감독규정 §-12)
경험위험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위험률로써 보험료 산출시 적용(보험료 산출시 자사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: 감독규정 §-63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s.or.kr>

< 적용시기 및 방법 >

□ 금번 참조위험률은 '06년이후 3년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,

- 과거와 같이 일괄시행시, 절판마케팅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*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보하고자,

* (예) 연금보험의 경우, 일부 대리점 등이 향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의 조급한 심리를 자극하여 부실한 상품설명 및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우려

- 신규로 개발하는 보험상품은 10월부터 적용하되, 기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성 → 저축성(생사혼합보험) → 연금보험 순으로 금년말까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

※ 사망을 보장하는 제6회 경험생명표의 위험률 수준이 제5회 보다 하락하여 보험료 인하효과가 큰 보장성 보험부터 단계적 적용 (다만, 손보사는 매년산출하며 올 10월부터 적용 예정)

<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>

상품구분	적용 시기	비 고
신규상품	'09.10.1~ (신상품 개발시)	
기존상품	'09.10.1~ 12.31 (동기간중 경시) 보장성 → 저축성 → 연금보험 順 ^{주)}	단계별 적용

주) 보험사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회사별로 차등 적용(단, 회사별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)

□ 또한, 보험회사별로 자기회사의 실정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게 하고, 보험회사간 보험료를 차별화하고자,

- 과거 보험개발원이 일괄 부가하던 안전할증*을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과거 경험통계 및 영업방침에 맞추어 부가하도록 관련제도**의 개선을 진행 중임

* (안전할증) 위험률은 과거 통계를 이용하여 미래의 발생률 등을 예측한 수치로써 과거 통계에 일정량의 안전할증을 부가하여 통계신뢰도 확보(근거: 보험업법 §29)

** (관련제도)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참조위험률(보험료 산출용)과 표준위험률(책임준비금 산정용)을 분리하여 이원화

<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>

- 금번 참조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(종신보험·정기보험)의 보험료는 하락(△10.9%~△5.4%)하고,
 - 입원·수술 등 생존을 보장하는 상품(암보험 등 질병보험)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상승(6.4%~11.1%)할 것으로 예상됨

※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수치는 보험회사별 상품별·가입조건별 등에 따라 달라짐

< 변경 전·후 보험료 변동 비교(예시) >

(단위 : 원)

구분		현행 보험료	변경 후 보험료(중간치)		
			보험료	변경금액	변경률
보 장 성	종신보험	20,200	19,100	△1,100	△5.4%
	정기보험	13,800	12,300	△1,500	△10.9%
생사혼합보험		19,800	19,000	△800	△4.0%
연금보험		597,100	635,100	38,000	6.4%
질병보험		17,700	20,800	3,100	11.1%

주1) 가입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, 남자 40세, 종신 및 80세만기, 20년납, 월

납

2) 세부 가입기준 및 보장기준은 <참고자료1> 참조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'09.10월부터 기존 판매상품이 보험회사별로 단계적으로 개정되므로
 - 소비자는 본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임

- 또한, 생 손보험회 홈페이지*에 게시된 “보험상품 비교공시” 메뉴를 활용하여
 -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한 후,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람
- * 생명보험협회 : www.klia.or.kr, 손해보험협회 : www.knia.or.kr
- ※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정하면 협회의 상품 비교공시란에 업데이트가 즉시 이루어짐

< 기대 효과 >

- (소비자) 보험요율에 최근 통계를 반영함에 따라 사망률 등의 하락에 따라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가 하락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
- (보험회사) 부수적으로 회사별로 보장내용에 알맞은 적정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

< 향후 계획 >

-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심사를 철저히하고, 참조위험률 변경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아울러, 보험회사의 상품개정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금년말 까지 참조위험률 관련 상품개정이 완료되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임

<참고자료1>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<참고자료2> 참조위험률과 표준위험률 개념비교

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- 제6회 경험생명표상 사망률이 현행(5회) 경험생명표 보다 낮아져 종신, 정기보험, 생사혼합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짐
 - 암발생률 및 암사망률이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높아져 질병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짐

< 변경 전·후 보험료 변동 비교(예시) > (단위 : 원)

구 분		현 행 보험료	변경 후 보험료					
			최 고		중 간		최 저	
			보험료	현행대비	보험료	현행대비	보험료	현행대비
보 장 성	종신 보험	20,200	19,600	△3.0%	19,100	△5.4%	18,700	△7.4%
	정기 보험	13,800	13,200	△4.3%	12,300	△10.9%	11,700	△15.2%
생사혼합보험		19,800	19,400	△2.0%	19,000	△4.0%	18,700	△5.6%
연금보험		597,100	645,000	8.0%	635,100	6.4%	616,300	3.2%
질병보험		17,700	22,600	27.7%	20,800	11.1%	19,500	10.2%

- 주1)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수치는 보험회사별 상품별 가입조건별 등에 따라 달라짐
 2) 가입기준 : 가입금액 1,000만원, 남자 40세, 종신 및 80세만기, 20년납, 월납
 3) 보장기준 : 아래 표 참조

종신보험	사망 또는 80%이상 장해상태시	1,000만원
정기보험		
생사혼합보험	사망및80%이상장해 또는 만기생존시	1,000만원
연금보험	연금개시나이 60세, 적립이율 4.0% 20년 보증 종신연금형	연금개시이후 연금월액 100만원
질병보험	암진단 또는 암사망시	1,000만원
	소액암 진단시	100만원

< 참고자료2 >

참조위험률과 표준위험률 개념 비교

구 분	참조위험률	표준위험률
정 의	보험요율산출기관(보험개발원)이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산출한 순보험료율(위험률)	책임준비금(보험료적립금 등) 산정시 적용하는 위험률로써 금감원장이 정함
산출주체	보험개발원이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	금감원이 주요사항 결정 후 보험개발원에 산출 의뢰
위 원 회	참조위험률 추진위원회 (보험개발원 주관)	표준위험률 산출위원회 (금감원 주관)
개정주기	생보 : 통상 3년(검증주기 3년) 손보 : " 매년(검증주기 1년)	필요시
공표방법	보험회사가 요청시 보험개발원이 제시	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
대상 위험률	지속적 확대	현행은 유지하나, 향후 확대 지양 (가급적 중요 위험률에 한정)